선박 폐기물기록부 비치 대상, 이렇게 바뀝니다!

'24년 6월 25일부터 다음 선박은 선내 폐기물기록부를 비치해야 합니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3조 규정)

적용 대상 선박

1. **총톤수 100톤 이상**, 또는
   (단, 총톤수 400톤 미만의 무인부선은 제외)
2.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 15명 이상**
   (단, 운항속력으로 1시간 이내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

※ 그밖에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폐기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고 길이 12m 이상의 모든 선박은 **폐기물 처리 안내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기록부 미비치(보존기간 3년), 미기록,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과태료 30만원**에 해당합니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30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위반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

선박 발생폐기물 처리기준

		영해기선 3해리 이내	3해리~12해리	12해리~25해리	25해리 이상
폐기물	모든 플라스틱제품 (합성로프, 합성어망, 쓰레기봉투, 독성 또는 중금속 잔류물 소각재)	배출불가			
	포장유해물질과 그 포장용기	배출불가			
	납, 카드뮴 수은, 육가크롬 중 하나 이상의 중금속이 0.01무게퍼센트 이상 포함된 쓰레기	배출불가			
화물 잔류물	부유성 화물잔류물	배출불가			배출가능
	침강성 화물잔류물	배출불가		배출가능	
	화물창 세정수	배출불가		해양환경에 해롭지 않은 일반세제 사용시 배출 가능	
음식물 찌꺼기	미분쇄	배출불가		배출가능	
	분쇄 · 연마	배출불가	크기 25mm 이하시 배출 가능		
분뇨	미분쇄	배출불가		항속 4노트 이상시 배출 가능	
	분뇨마쇄소독장치	배출불가	항속 4노트 이상시 배출 가능		
		배출 가능	국내항해 400톤 미만 선박은 가능 (단,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 항만 · 어항구역 등은 불가)		
	분뇨처리장치	배출 가능 (단, 수산자원보호구역, 보호수면 및 육성수면은 불가)			
중수	거주구역의 목욕, 세탁, 설거지 등 중수 (화장실 및 화물구역 오수 제외)	배출 가능 (단, 수산자원보호구역, 보호수면,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해역 등은 불가)			
수산동식물	어업활동 중 혼획 · 유입된 수산동식물 또는 자연기원물질	배출 가능 (단,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한 자에 한하여 어업활동 수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